

<장차법 대통령 서명식 장차법 관련 발언 요지> March 2007

김광이(장추련 법제위 부위원장)

- 지난 2월 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 통과로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에 약속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공약이 이뤄진 점에 대해 고마움을 가짐. 이어서 포괄적 대 상에 대한 차별금지법도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람.
- 이런 과정에서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향해 한 발자욱 접 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음
-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무지로 인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 고, 홍보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고, 특히 악의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적으로 행해지 는 장애인 차별은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적이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함
- 그런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차별의 끝이 아닌, 장애인차별철폐를 향한 또 다른 시작임을 우리는 알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는 나름의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했음. 대통령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실효 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람
-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장애인차별 감수성을 제대로 입 어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별시정 기구에 관한 명료한 그림이 있어야 함. 현재 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 감수성을 미진한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장애인차 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독립적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요구했던 바, 이에 걸 맞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실행할 행정력도 그만큼 크기와 역량을 갖추어 추진토록 해야 할 것임. 또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의 지원 또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악의적인 장애인 차별에 한해서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발동하게 되어 있는 바, 이를 위한 법무부 내의 장치가 필요함. 예를 들어 장애인 차별 감수성을 가진 장애인 혹은 관계자들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시정명령권 여부의 심의를 할 수 있어야 함
-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가 장애인 차별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관한 범위와 시기 등을 시행령 안에서 규정케 한 바, 일상적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서 가능성을 가능성을 넓게 인식하고 시행대상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야 하고, 특히 그 시행 시기를 가장 최소화해서 빠른 시기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무엇보다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와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정책으로 장애인차별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나, 제정된 법률에 이에 관한 언급이 없어, 시행령을 만들 때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임.